# 2014년도 인천교통공사에 대한 전출금 출자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3. 12. 2(월)

건 설 교 통 위 원 회

##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13. 11. .**

**나. 제 안 자 : 인천광역시장**

**다. 회부일자 : 2013. 11. .**

**라. 상정일자 : 2013. 12. 2.(제212회 제2차 정례회 제3일차 건설교통위위원회)**

○ 제안설명 : 건설교통국장 강 상 석

○ 검토보고 :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 임헌기

○ 질의 및 토론

**○ 원안가결**

## 2. 제안 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도시철도 운영 누적 적자 증가와 터미널 매각에 따른 임대수익 감소로 재정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천교통공사에 운영비와 터미널 임대수익 손실보전금을 지원하여 재정 건전화를 도모하고 **교통공사 통합에 따라 합병매수차익 발생으로 부과되는 법인세를** 절감하고자,

○ 운영비 100억원과 터미널 임대수익 손실보전금 250억원을 2014년도 본 예산에 반영하고,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출자금으로 지원하고자 함

## 나. 주요골자

○ 출 자 금 : 350억원

○ 출자방식 : 현금출자

○ 출 자 처 : 인천교통공사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인천교통공사에 현물출자 하였던 인천종합터미널을 2012년 매각함에 따라 발생되는 임대 수익의 손실보전을 위하여 지원키로 한 경상보조금 1,250억원 중 2014년도 분 250억원과 도시철도운송적자 보전 일반운영비 100억원 등 350억원을 인천교통공사 운영 지원 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견이 없음

○ 다만, 예산의 목적으로 볼 때 인천교통공사 운영지원에 대한 보조금은 일반운영비 또는 경상보조금(전출금)으로 예산편성 되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

○ 단지 합병매수차익에 따른 법인세 약60억원을 절감하기 위하여 보조금 350억원을 출자금 항목으로 예산편성 하여 지원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 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

## 4. 질의 및 답변요지

○ 터미널 매각 이전에는 교통공사 지원액이 얼마인가?(정수영 의원)

⇒ 2011년 249억원, 2010년 250억원, 2009년 351억원임.

○ 지원 사유는 무엇인가?(정수영 의원)

⇒ 일반운영비 보조임.

○ 터미널 매각 이후 운영비 보조가 100억원으로 줄어드는데 이유는?(정수영 의원)

⇒ 시의 재정상황에 따라 운영비 보조는 차이가 있음.

○ 당기 순손실이 크게 증가한 주 원인은 무엇인가?(이재호 의원)

○ 교통공사와 메트로의 통합으로 메트로 임직원 임금상승 등이 원인 아닌가? 통합의 효과는 없이 단순한 이벤트에 그치는 것 아닌가?(이재호 의원)

⇒ 단기적으로 통합의 효과를 평가하는 것은 어려움.

## 5. 토론요지

**가. 찬 성 : 이도형, 이재병, 김병철, 정수영, 이재호, 전원기, 전용철 의원**

- 원안에 동의함.

**나. 반 대 : 없음**

##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7, 찬성 : 7명)

## 7. 기타

○ 특이사항 없음

붙임 2014년 인천교통공사에 대한 전출금 출자 동의안 1부.

# 2014년도 인천교통공사에 대한 전출금 출자동의(안)

| 의안 번호 | 1037 |
|---|---|

| 제출연월일 : 2013. 11.<br>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
|---|

## 1. 제안이유

○ 도시철도 운영 누적 적자 증가와 터미널 매각에 따른 임대수익 감소로 재정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천교통공사에 운영비와 터미널 임대수익 손실보전금을 지원하여 재정 건전화를 도모하고 교통공사 통합에 따라 합병매수차익 발생으로 부과되는 법인세를 절감하고자,

○ 운영비 100억원과 터미널 임대수익 손실보전금 250억원을 2014년도 본 예산에 반영하고,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시 의회의 동의를 얻어 출자금으로 지원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출 자 금 : 350억원

○ 출자방식 : 현금출자

○ 출 자 처 : 인천교통공사

## 3. 참고사항

가. 2014년 인천교통공사에 대한 전출금 출자계획 1부.

나. 관계법령 1부. 끝.

붙임 가. 2014년도 인천교통공사에 대한 전출금 출자계획

# 2014년도 인천교통공사에 대한 전출금 출자계획

❖ 인천교통공사 통합으로 합병매수차익이 발생하여 법인세 부과
- 법인세 절감을 위해 지원형태 전환 : 전출금 → 출자금 (교통기획과-12321, ′13.9.8)

❖ 전출금과 출자금에 대한 비교 분석을 통해 국세절감 방안 모색

→ 市 의회 출자동의 절차 필요 : 제212회 정기회시(지방재정법 제18조)

## Ⅰ 실태분석

○ 교통공사 + 인천메트로 → 인천교통공사 (′11.12.28)

- 합병매수차익 : 397,082백만원 → 5개년 분할 익금 산입 (′12~′16)

※ 근거법령 : 법인세법 제44조의3

○ 합병 매수 차익 연도별 익금 산입 내역

(단위:백만원)

| 합병매수차익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
| 397,082 | 86,035 | 79,416 | 79,416 | 79,416 | 72,799 |

○ 지원형태별 비교

(단위:백만원)

| 구 분 | 지원금액 | 지원형태별 법인세 산출내역 | | | 비 고 |
|---|---|---|---|---|---|
| | | 전출금일 경우 | 출자금일 경우 | 절감세액 | |
| 계 | 170,000 | 51,770 | 11,769 | △33,255 | |
| 2012년 | 15,000 | 6,746 | - | 0 | 전출금(납부완료) |
| 2013년 | 40,000 | 11,959 | 5,909 | △6,050 | 전출금(150억원)<br>출자금(250억원) |
| 2014년 | 35,000 | 10,749 | 3,172 | △7,577 | 출자금 |
| 2015년 | 40,000 | 11,959 | 2,072 | △9,887 | 〃 |
| 2016년 | 40,000 | 10,357 | 616 | △9,741 | 〃 |

## Ⅱ 2014년도 출자계획

○ 총 규 모 : 35,000백만원

○ 세부내역

- 운영비 지원 : 10,000백만원

→ 도시철도 운송 적자 부족분

※ 2012년 도시철도 운임 손실 규모 : 67,146백만원
- 승객1인당 손실액 741원 × 90,615천명 = 67,145,715천원
- 2012년 운영원가(1,453원) - 평균운임(712원) = 1인당 손실액(741원)

- 터미널 임대수익 손실 보전금 지원 : 25,000백만원

→ 터미널 매각에 따른 임대수익 감소분 손실 보전

※ 5년간 평균 영업수익 기준 (24,638백만원)으로 향후 5년간 지원
- 기 간 : 2013 ~ 2017년(5년간)
- 규 모 : 125,000백만원

○ 출자시기 : 2014년중

## Ⅲ 향후계획

○ 출자계획 동의(안) 제출 : 市 의회(제212회 정례회 時)

※ 건설교통위원회 심의 : 2013. 12. 2(월)

○ 출자금 교부 : 년중(市 재정상황 고려)

○ 2015년 이후 : 법인세 부과 및 교통공사 적자 상황 감안 지원형태 및 지원금 규모 재조정

## 【 참고자료 】

### ☐ 교통공사 지원내역

(단위:백만원)

| 구 분 | 계 | 2010 이전 | 2011 | 2012 | 2013 |
|---|---|---|---|---|---|
| 계 | 2,740,691 | 2,241,126 | 110,327 | △338,077 | 51,161 |
| 경상보조금 (전출금) | 276,689 | 200,602 | 32,363 | 21,862 | 21,862 |
| 출자금 등 | 2,507,726 | 2,040,524 | 77,964 | △359,939 | 29,299 |

※ 출자금 : 현물출자 및 현금출자(운영비 일부, 터미널 임대수익 보전금)

### ☐ 인천교통공사 운영비 지원 현황(1999~2013년)

(단위 : 천명, 백만원)

| 구 분 | 지원현황 | | 운임 손실 | | | 비 고 |
|---|---|---|---|---|---|---|
| | 당기순손실 | 운영지원 | 승객1인당 손실액(원) | 연 간 수송인원 | 손실금액 | |
| 계 | 687,277 | 288,872 | | 977,635 | 473,505 | |
| 1999년 | 14,971 | 22,500 | 1,326 | 11,716 | 15,535 | 전액 출자금 |
| 2000년 | 13,550 | 13,301 | 309 | 56,356 | 17,414 | 〃 |
| 2001년 | 16,912 | 11,000 | 278 | 68,943 | 19,166 | 〃 |
| 2002년 | 95,278 | 13,683 | 294 | 76,019 | 22,350 | 〃 |
| 2003년 | 58,539 | 15,000 | 344 | 74,306 | 25,561 | 출자금 10,906 / 보조금-4,094 |
| 2004년 | 52,076 | 10,877 | 543 | 71,236 | 38,681 | 출자금 3,980 / 보조금 6,897 |
| 2005년 | 37,284 | 16,663 | 452 | 69,634 | 31,475 | 전액 보조금 |
| 2006년 | 28,354 | 21,075 | 472 | 71,494 | 33,745 | 〃 |
| 2007년 | 27,343 | 21,000 | 472 | 72,828 | 34,375 | 〃 |
| 2008년 | 34,837 | 28,700 | 605 | 73,300 | 44,347 | 〃 |
| 2009년 | 32,816 | 35,123 | 524 | 75,103 | 39,354 | 〃 |
| 2010년 | 50,575 | 25,027 | 496 | 80,133 | 39,746 | 〃 |
| 2011년 | 63,811 | 24,923 | 519 | 85,953 | 44,610 | 〃 |
| 2012년 | 160,931 | 15,000 | 741 | 90,615 | 67,146 | 〃 |
| 2013년 | - | 15,000 | - | - | - | 〃 |

붙임 나. 관계법령

## 지방공기업법

**제71조의2(재정지원)**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에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장기대부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8.4]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따라 출자(出資)할 수 있도록 정하여진 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 외의 단체에는 출자를 할 수 없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사업을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자와 공동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출자를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1.8.4]